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25 선고 2024가단5236467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고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라이프 담당변호사 유승호

피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나은

변론 종결 2024. 10. 28.

판결 선고 2024. 11.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0,895,012원 및 그 중 9,136,046원에 대하여 2024. 5. 17.부터 2024. 5. 21.까지는 연 17.3%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30,345,595원 및 그 중 13,500,000원에 대하여 2024. 5. 17.부터 2024. 5. 21.까지는 연 16.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55,094,684원 및 그 중 25,550,379원에 대하여 2024. 5. 17.부터 2024. 5. 2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C(주)는 D중앙회와 사이에서 2004. 5. 31. 대출금액 7,500만 원의, 2003. 12. 1. 대출금액 6,750만 원의, 2004. 12. 6. 대출금액 2,700만 원의 각 여신거래약정(이하 합하여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7. 8. 23.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채권을 최종적으로 양수하였고, 그 무렵 채무자인 C(주)에게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

다. 2024. 5. 16.자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채무원리금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L1	9,136,046	11,758,966	연 17.3%	20,895,012	B
L2	13,500,000	16,845,595	연 16.9%	30,345,595	B
L3	25,550,379	29,544,305	연 15%	55,094,684	B
합계	48,186,425	58,148,866		106,335,29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채권을 최종적으로 양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채무원리금으로서 ① 20,895,012원 및 그 중 9,136,046원에 대하여 2024. 5.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4. 5. 21.까지는 약정연체이율에 따른 연 17.3%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30,345,595원 및 그 중 13,500,000원에 대하여 2024. 5. 17.부터 2024. 5. 21.까지는 약정연체이율에 따른 연 16.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③55,094,684원 및 그 중 25,550,379원에 대하여 2024. 5. 17.부터 2024. 5. 21.까지는 약정연체이율에 따른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의 주채무자인 C(주)가 청주지방법원 2010회합11 회생사건에서 2011. 2. 14. 회생계획이 인가되고 2016. 7. 18. 회생절차가 종결되었으므로 피고의 보증채무도 면책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0조 제2항 제1호], 원고는 보증인인 피고에 대하여 주채무자 C(주)의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피고가 청주지방법원 2017회단1 회생사건의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이 인가되고 회생절차가 종결됨으로써 원고의 회생채권에 관하여 피고 스스로 면책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위와 같은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의하여 회생채권이 실권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회생채권자로 하여금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권리의 실권 여부에 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적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 및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1다22336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5, 7 내지 9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의 주채무자인 C(주)의 사내이사이자 위 주채무의 보증인이고, C(주) 및 피고에 대한 각 회생절차의 관리인이었던 점, ② C(주)에 대한 회생절차에서는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의 채권자가 채권자목록에 정상적으로 기재된 반면,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는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의(보증)채권자가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점, ③ 피고는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회생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자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도 피고의 회생절차에서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 역시 이유 없다.

3) 피고는,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의 주채무자인 C(주)가 청주지방법원 2010회합11 회생사건에서 2011. 2. 14.자로 받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된 시점에 위 주채무가 소멸하게 됨에 따라 그 부분에 대응하는 보증채무가 그 때로부터 이미 10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정리절차 참가로 인한 회사정리법 제5조 소정의 시효중단의 효력은 정리회사의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채무에도 미치고 그 효력은 정리절차 참가라는 권리행사가 지속되는 한 그대로 유지되므로, 후에 정리계획에 의하여 주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거나 이율이 경감된 경우 그 면제 또는 경감된 부분의 주채무는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이 확정된 때에 소멸하게 됨에 따라 그 시점에서 채권자의 정리절차에서의 권리행사가 종료되어 그 부분에 대응하는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위 인가결정 확정시부터 다시 진행한다 할 것이나, 정리계획에 의해서도 주채무가 잔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리절차 참가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그 정리절차의 폐지결정 또는 종결결정이 확정되어 정리절차에 있어서의 권리행사가 종료되면 그 시점부터 중단되어 있던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된다 할 것이고, 아울러 그 이후에도 보증채무가 소멸하기 전에 주채무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증채무에 대하여도 그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11231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6, 7,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의 주채무자인 C(주)는 회생사건에서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2020. 12. 29.까지 매월 원금의 일정 부분을 원고에게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로써 위 주채무에 대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에도 시효중단의 사유가 발생하였고 그 시효중단의 효력이 연대보증인인 피고에 대하여도 미치므로(민법 제440조), 피고의 보증채무 역시 2020. 12. 29. 최종적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원고가 그로부터 5년의 상사시효가 도과하기 전인 2024. 5. 16.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상 피고의 위 소멸시효 완성 항변 역시 이유 없다.

4)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채권을 최종적으로 양수받음에 있어 피고가 어떠한 채권양도양수통지서를 수령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채권양도에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하여 그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면 보증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다1100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안현진